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**보 도 자 료** 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4월 3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기술개발과 천영길 과장(044-203-4520), 염정수 사무관(4526)

산업 현장의 여성연구원 활용 촉진을 위한 R&D 지원규정 시행

- ① 시간선택제 근무 여성연구원 인건비 현금지원 신설-
- ② R&D 과제선정시 여성연구원 참여비중 높은 기업의 가점 2점 → 5점 상향-
- ③ 여성연구원 비중이 낮은 기업은 여성인력활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-
- ④ 그 외 S/W 분야 인건비 지원 확대, 과거 실패 기업인이라도 재창업 기업(중진공 지원)은 R&D과제 신청 허용 등 애로사항 개선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, 이하 산업부)는 이공계 출신 여성을 산업현장의 핵심 R&D 인력으로 확충하고,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('14.4.22)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*을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산업부 R&D 사업의 공통적인 운영기준인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」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「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」,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」등 3개 규정

□ 주요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사업신청 공고문*에 반영하여 적용하였던 산업현장의 여성 R&D인력 확충방안('13.11)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명문화를 하였다.

* 산업핵심기술개발과제('14. 2.24), 글로벌전문기업 기술개발과제(3.7), 소재부품기술개발과제(4.8) 등 기 공고 과제적용

○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~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 기존 여성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(정부출연금)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고,

○ 기업의 여성연구원 채용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R&D 과제 선정시 여성연구원의 참여에 따라 우대하는 가점 기준을 강화하고, 가점 점수는 기존 2점에서 최대 5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.

- 예전에는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10% 이상인 경우에는 2점의 가점을 부여 하였으나,

- 여성 연구원의 참여비중 확대를 위해 연구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총 연구원 중 여성연구원 비중이 20% 이상인 경우 5점, 주관기관의 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% 이상이면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.

○ 또한, 자동차, 철강 등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한 R&D 참여 확대를 위해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R&D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비중이 5% 미만인 기업은 여성연구원 채용 계획 등을 포함한 '여성인력활용계획서'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.

② 연구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연구 몰입도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R&D 지원을 확대하였다.

○ S/W 분야의 인건비 현금지원 대상에 정밀생산기계, 자동차/철도차량, 청정생산, 섬유제품 등 4개 기술분야를 추가한 총 61개로 확대하여 연구인력 지원을 강화하였고,

○ R&D 수행기관의 정부출연금 수령 및 예산 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평가에서 협약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10일* 단축을 비롯해 학력(박사)과 직위(부장) 중심의 R&D 평가위원 자격에 기술사를 추가함으로써 현장 실무를 겸비한 고급 엔지니어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였다.

* 평가위원회에서 '계속'으로 판정된 과제는 수행기관의 이의신청 절차(10일 소요)를 생략

○ 그리고, 조세체납 또는 채무 불이행이 있는 기업은 산업부 R&D 과제 신청이 불가능했던 규제를 완화해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받은 경우(현재 400여 개사)에는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과거에 실패한 기업인 이더라도 R&D 수행을 통한 기업의 재기를 지원한다.

□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“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산업계 여성 연구원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와 고용 확대는 물론 공대 여대생이 우수한 연구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.”면서, “연구수행자 중심의 R&D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<첨부> 주요 반영내용 요약 1부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염정수 사무관(☎ 044-203-45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주요 반영내용 요약

□ 개정규정

○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(고시, 이하 공통요령)」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(고시, 이하 사업비요령)」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(예규, 이하 평가지침)」 등 3개 규정

□ 주요 반영 내용

제도화 과제	내 용
1 산업현장의 여성 R&D인력 확충방안('13.11) 명문화	
① 육아·무담으로 인한 여성연구원 경력 단절 문제 해소	- 시간선택제로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현금 지원근거 마련 (사업비요령 제5조8항5호)
② 여성인력활용계획서 제출	- 여성 연구원 비율이 낮은 기업(5% 미만)은 향후 여성인력 확보방안 등 제출 (평가지침 26. 기타사항 라. 표준서식)
③여성 연구원 참여시 가점	- 여성 연구책임자, 여성연구원이 20% 이상인 경우 등은 R&D 과제선정시 가점부여 (평가지침 10. 신규평가 라. 우대기준)
2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등 개선	
① 중소기업의 기존 연구원에게 인건비 현금지원이 되는 SW분야 4개 기술 추가	- 정밀생산기계 IT·SW, 자동차/철도차량 IT·S/W, 청정생산IT·SW, 섬유제품 IT·SW (사업비 요령 별표 제1호)
② 평가결과 확정기간 단축에 따른 예산 조기 집행	- 평가위원회에서 ‘계속’으로 판정된 과제는 이의신청(총 10일) 절차 생략 (평가지침 16.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가.연차평가)
③ 산업기술 R&D 평가위원 자격에 기술사 추가	- 현장 고급 엔지니어의 평가위원 참여 확대를 위한 기술사 추가(공통요령 제6조4항)

제도화 과제	내 용
④ 재창업 기업의 정부 R&D 참여 제한 완화	- 재창업자금(중기청) 수혜기업 등 재기지원 필요성이 있는 기업은 R&D 신청허용 (평가관리지침 10.신규평가 가.사전검토 2) 신청자격 검토)
⑤ 유사서류 통합으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	- 양식 통합(RCMS 적용동의서 + 이체동의서) (평가지침 26. 기타사항 라. 표준서식)
⑥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마감일 정의를 명확화	- 이의신청 마감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(공통요령 제21조8항 등)
⑦ 두뇌전문기업* 인건비 현금지급 * 기업활동이 기획·설계 등 가치사슬 상위분야 집중업종(엔지니어링, 디자인, 임베디드SW, SoC, 바이오)	- 산업부가 지정한 두뇌전문기업이 해당 두뇌사업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지원 근거마련 (사업비요령 제5조8항6호)
⑧우수 연구성과자 (기술이전, 장관 포상자)에 대한 가점 부여	- 기술이전 우수자(기술료 2천만원 or [illegible] 장관 포상자가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시 가점 부여 (평가지침 10.신규평가 라.우대기준)
⑨ 산업기술분류체계 개정	- 기술변화에 따라 대분류(7→8개), 중분류(66→73개), 소분류(550→594개) 개정 (공통요령 별표 1 등)

※ 반영(개정) 된 전체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(www.motie.go.kr) → 중앙 상단의 '정보' → '국회/법령' → '정책고시' 또는 '예규'에서 확인할 수 있음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